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안내

청약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접수시간	신청장소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2022.08.30.(화)~2022.08.31(수)	•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제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84A	84B	84C	110A	110B	121P	146P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74	26	6	11	11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으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단,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해당 산업단지(대풍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이테크산업단지,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중부산업단지, 오선산업단지, 생곡산업단지, 유촌산업단지, 옥령산업단지, 음성농공단지, 금왕농공단지, 삼성농공단지, 성본산업단지, 상우산업단지, 리노삼봉산업단지, 금왕테크노산업단지, 성안산업단지, 성안제2산업단지, 인곡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가 속한 음성군(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대풍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이테크산업단지,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중부산업단지, 오선산업단지, 생곡산업단지, 유촌산업단지, 옥령산업단지, 음성농공단지, 금왕농공단지, 삼성농공단지, 성본산업단지, 상우산업단지, 리노삼봉산업단지, 금왕테크노산업단지, 성안산업단지, 성안제2산업단지, 인곡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 제외) ※ 소이산업단지 및 대소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가 아니므로, 소이산업단지 및 대소산업단지 입주기업(입주예정기업 포함) 종사자는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판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합니다. ① [입주(예정)기업]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 「입주기업」이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와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수요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 제조업 -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식·문화·정보통신·재활용산업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각 호의 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② [연구·소]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립·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③ [의료기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종사자 ④ [교육기관]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예정)하여 「유아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의사항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임원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자 등 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공급하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가 2021.05.24. 개정되어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세대원 포함)도 당사의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